

2007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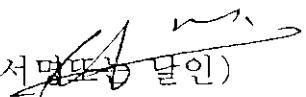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

위의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발의자 : 성명중 의원 (서명~~또는~~ 달인) 

외 4인 0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의안발의서명서

성명증		
김영섭		
강현수		
이기우		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1172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9. .
발 의 자 : 성명중 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 등)

- 제1조(목적)
 - 「지방자치법」 “제 63조”를 “제 71 조”로
- 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
 - 제2항 중 “제55조제1항”를 “제63조”로
- 제77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
 - “제71조”를 “제 79조”로
- 제8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
 - 제1항 중 “제78조”를 “제86조”로, 제3항 중 “제75조”를 “제83조”로 한다.

- 붙임 1.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 · 구 조문 대비 표 끝.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3조”를 “제71조”로 하고,
제14조 중 “제55조1항”를 “제63조”로 하고,
제77조 중 “제71조”를 “제79조”로 하고,
제89조제1항 중 “제78조”를 “제86조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제75조”
를 “제83조”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<u>제63조</u>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(이하 “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의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55조</u>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략) 	<p>제1조(목적) <u>제71조</u>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63조</u> ③ (현행과 같음)

신·구 조문 대비 표